

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

세칙 · 소관 대외협력팀 · 현행 규정

개정 2026. 5. 4. · 시행 2026. 5. 4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44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전 4:15:35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「발전기금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에 의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-04-19>

제2조(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)

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기부증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.

제3조(세액공제)

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.

<전면개정 2021-04-19>

제4조(기부자 성명각인)

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개정 2021-04-19>

1.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
2.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
3. 기타 :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

제5조(행사 및 책자 발간)

삼육대학교는 기부자를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시 기부자의 사진, 인적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보존할 수 있다. <개정 2021-04-19>

제6조(부동산 기부자)

①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한다. 다만 기부자가 기부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그 목적을 정하여 사용한다.<개정 2021-04-19>

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 한다.

제7조(귀중품 등의 기부자)

귀중품, 도서자료, 연구용 기자재, 기타 무형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현물과 무형자산의 금액을 당해 분야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하고 그 가액에 따라 [별표1]과 같이 예우한다. <개정 2021-04-19>

제8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

기부자를 책자에 수록하고,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. <개정 2021-04-19>

1.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[별표1]과 같이 예우한다. 단 지정기부금 기부자는 기부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6-05-04>
2. 분납 기부자도 분납 누적 금액 총 합산금액이 [별표1]의 예우에서 정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그 도달 시점부터 그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26-05-04>
3. 해외지역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첨부 [별표1]에 준하되,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예우할 수 있다. <개정 2026-05-04>
4. 기부자 예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적용할 수 없다.

제9조(기존 기부자 예우)

기존 기부자는 기존 예우에 준하여 예우한다.

〈전면개정 2021-04-19〉

제10조(세부사항)

이 세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발전기금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〈전면개정 2021-04-19〉

제11조

(원문에 제목·본문이 없습니다)

부 칙

1. 본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시행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시행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시행 세칙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·서식

· [별표1] 기부자 예우표(전면개정)_2026.5.4..pdf

별표·서식 파일은 사이트에서 내려받으세요.